


#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안 번호	2752
----------	------

제출일자 : 2025. 11. 7  
제출자 : 달성군수 

## 1. 제안이유

달성군 문화도시센터 관리·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해당 사무를 재계약하고자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회동의)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위탁대상 현황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종사자수	비고
달성 문화도시센터	화원읍 성천로 5, 별관 7층	322.79m <sup>2</sup>	11명	

### 나. 위탁대상 사무의 범위 및 내용

(달성 문화도시센터 운영)

- 문화도시 구성에 관한 업무
-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홍보·운영 및 인력관리
-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예산 집행 및 결산
- 문화도시 조성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위원회 운영
- 그 외 문화도시 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이용자 편의 증진과 안전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문화도시센터 관리재산(위탁시설))

- 권역별 커뮤니티 공간

재산의 표시				사용목적
소재지		구분	면적(m <sup>2</sup> )	
화원읍 천내리	454-4	토지(대지)	618	문화도시 조성사업 거점공간(화원권역)
		건물	1185.78	
다사읍 매곡리	719-19	토지(대지)	295	문화도시 조성사업 거점공간(다사·하빈권역)
		건물	202.54	

다. 조직 및 구성

구분	계	센터장	팀장	매니저	공무원(파견)
인원	11명	1명	2명	7명	1명

라. 위탁기간: 2년(2026. 3. 1. ~ 2028. 2. 29.)

마. 민간위탁 추진일정

- 2025. 9. : 계획수립
- 2025. 10. : 재계약 적정성 심의(민간위탁심의위원회)
- 2025. 11. : 재계약 군의회 동의
- 2026. 2. : 위·수탁 협약 체결

바.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함으로 의결 ※첨부파일 참조

사. 성과평가 결과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5조 근거,  
「지역문화진흥법」 제14조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는 위탁사무에 해당  
※첨부파일 참조(관련 공문)

아. 향후일정

- 2026. 2. : 위·수탁 협약 체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제16조(문화도시센터 설치 및 운영), 제17조(문화도시센터의 기능), 제18조(위탁운영)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제4의3(의회동의),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 나.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2026년 사업비 : 30억 원(국비 50% 시비 15% 군비 35%)
- 2027년 사업비 : 30억 원(국비 50% 시비 15% 군비 35%)

##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제16조(문화도시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지역문화진흥법」제15조의 문화도시의 지정과 관련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달성군 문화도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군수의 승인을 받고 별도의 독립된 운영 규정과 재무·회계 규칙 등을 만들 수 있다.

**제17조(문화도시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홍보·운영 및 인력관리
2.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예산 집행 및 결산
3. 문화도시 조성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위원회 운영
4. 그 밖에 군수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센터의 관리·운영 사무를 문화예술 관련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에 대하여 우선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4조의3(의회동의) ① 군수는 제4조의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재위탁 및 재계약을 포함한다)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한 후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수탁기관의 선정**
2. 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적정성
3. 그 밖에 민간위탁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국가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 검토서**

**1. 기본 검토사항**

<b>대 상 사 무</b>	달성군 문화도시 조성 사업
<b>위 추 진 목 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달성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li> <li>○ 예비문화도시 사업 추진(3년 간)으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의 연속성 확보</li> </ul>
<b>위 탁 근 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위임)</li> <li>-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제18조제1항</li> <li>-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제2항</li> </ul> </li> </ul>
<b>위 탁 내 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경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제16조~제18조</li> <li>- 달성 문화도시 조성 계획(문화예술과-2534(2022. 12. 13.)호.)</li> </ul> </li> <li>○ 추진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 수탁기관 : (재)달성문화재단</li> <li>- 재계약 적정성 심의 의결 : 2025. 10.(민간위탁심의위원회)</li> </ul> </li> <li>○ 위탁기간: 2년(2026. 3. 1. ~ 2028. 2. 29.)</li> <li>○ 위탁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업무</li> <li>-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홍보·운영 및 인력관리</li> <li>-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예산 집행 및 결산</li> <li>- 문화도시 조성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위원회 운영</li> <li>- 그 외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ul> </li> <li>○ 위탁금액 : 60억 원(2년간 위탁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비 50%, 시비 15%, 군비 35%</li> </ul> </li> </ul>

<p>적 정 성 점 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문화체육관광부 제4차 법정문화도시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위해 기존의 공공기관에 위탁</li> <li>○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재)달성문화재단은 군이 출연한 기관으로 군 감사에 영향을 받는 기관</li> <li>○ 경제적 효율성 : (재)달성문화재단은 군이 출연한 기관으로 문화·예술사업 특화 기관</li> <li>○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예비문화도시 사업 추진(3년간)과 제4차 법정문화도시 지정 후 사업 추진(3년간)으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성과 사업의 연속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년도 문화도시 성과평가 우수도시 선정</li> <li>- 2024년도 문화도시 성과평가 우수도시 선정</li> <li>- 2025년 지방시대위원회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선정</li> </ul> </li> <li>○ 성과 측정의 용이성 : 매년 성과발표 및 성과평가 수행</li> <li>○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사업계획서, 주기적 운영사항 보고 및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해 사용내역 점검 및 감독</li> </ul>
<p>기 존 수탁기관 및 선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탁기관명 : (재)달성문화재단</li> <li>○ 수탁 기간 : 2023. 3. 1. ~ 2026. 2. 28.(3년)</li> <li>○ 위탁 예산 : 90억 원(3년간 위탁사업비)</li> <li>○ 위탁기관 선정방법 : 수의계약</li> </ul>
<p>수탁기관 선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탁기관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의협약 추진</li> <li>※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계약의 방법) 「위 동법 시행령」 제25조제1항8호사목(수의계약)</li> </ul> </li> <li>○ 수의협약 예정인 업체명 : (재)달성문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달성군 출연기관으로 문화·예술사업 특화 기관</li> </ul> </li> </ul>

위탁사업비	연도별	위탁사업비 (천원)	산출내역
	2023년	3,000,000	국비 50%, 시비 15%, 군비 35%
	2024년	3,000,000	국비 50%, 시비 15%, 군비 35%
	2025년	3,000,000	국비 50%, 시비 15%, 군비 35%
	2026년 (예정)	3,000,000	국비 50%, 시비 15%, 군비 35%
	2027년 (예정)	3,000,000	국비 50%, 시비 15%, 군비 35%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p>○ 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달성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li> <li>-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의 연속성 확보</li> </ul> <p>○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5. 10.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li> <li>*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li> <li>* 심의위원 : 7명</li> <li>[위원장(부군수), 부위원장(문화관광국장),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 등 5]</li> <li>- 2025. 11. : 의회 동의(재계약 건)</li> <li>- 2026. 1. : 공유재산심의위원회(공유재산 사용료 면제)</li> <li>- 2026. 2. : 의회 동의(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건)</li> <li>- 2026. 2. : 위·수탁협의를 체결[달성군 ↔ (재)달성문화재단]</li> </ul>		

## 2. 시설위탁

시설개요	시설명	화원우체국(다시우체국)		
	소재지	화원읍 천내리 454-4		
	시설규모	토지(대) 618㎡, 건물 185.78㎡		
	시설용도	문화도시 화원권역 거점공간		
	이용대상	지역주민	수용인원	30명
위치도				
지역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원읍행정복지센터 신청사(화원역) 인접지</li> <li>○ 주민 문화활동 여건 적합</li> </ul>			
현장사진	 <p style="text-align: center;">〈다시우체국〉</p>			

시설 개요	시설명	다사로운 다사		
	소재지	다사읍 매곡리 719-19		
	시설규모	토지(대) 295㎡, 건물 202.54㎡		
	시설용도	문화도시 다사·하빈권역 거점공간		
	이용대상	지역주민	수용인원	30명
위치도				
지역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사 주거공간 및 다사역 인접지</li> <li>○ 주민 문화활동 여건 적합</li> </ul>			
현장사진	 <p style="text-align: center;">〈다사로운 다사〉</p>			

## 수익협약(또는 재계약) 사유서

현황 및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시설의 수탁 가능 업체 수 : 총 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달성문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년간 예비문화도시 사업 추진</li> <li>· 법정문화도시 지정 후(23년~현재) 사업 추진</li> </ul> </li> </ul> </li> <li>○ 타 지방자치단체 현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정문화도시 지자체 대부분 문화도시센터 또는 문화재단 추진</li> </ul> </li> </ul>																
수익· 재계약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적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제사목</li> <li>- 달성군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제18조제1항</li> <li>-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제2항</li> </ul> </li> <li>○ 수익협약(또는 재계약)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문화도시 사업 추진(3년간) 및 법정문화도시 지정 후 사업 추진(23년~현재)으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의 연속성 확보</li> </ul> </li> <li>○ 공개 모집하는 경우 예상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정문화도시 지정으로 계획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 불가</li> </ul> </li> </ul>																
대상기관 검토내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b>위탁사무명</b></td> <td>달성 문화도시 조성 사업</td> </tr> <tr> <td><b>예산 및 기간</b></td> <td>예산 : 60억 원(연간 30억) 재계약기간 : 2026. 3. 1. ~ 2028. 2. 29.</td> </tr> <tr> <td><b>대상기관명(대표자)</b></td> <td>(재)달성문화재단 이사장(최재훈)</td> </tr> <tr> <td><b>주요사업</b></td> <td>군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향유 콘텐츠 및 인프라 구축</td> </tr> <tr> <td><b>설립일자 및 주요연혁</b></td> <td>2011. 5. 17. 설립</td> </tr> <tr> <td><b>인력현황</b></td> <td>정원 18명, 현원 34명</td> </tr> <tr> <td><b>재무현황 및 재정부담능력</b></td> <td>총재산 : 70억원, 부채 : 0</td> </tr> <tr> <td><b>전문성 확보 및 사무처리 실적</b></td> <td>100대 피아노 콘서트 등 다수 행사 및 축제 운영</td> </tr> </table>	<b>위탁사무명</b>	달성 문화도시 조성 사업	<b>예산 및 기간</b>	예산 : 60억 원(연간 30억) 재계약기간 : 2026. 3. 1. ~ 2028. 2. 29.	<b>대상기관명(대표자)</b>	(재)달성문화재단 이사장(최재훈)	<b>주요사업</b>	군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향유 콘텐츠 및 인프라 구축	<b>설립일자 및 주요연혁</b>	2011. 5. 17. 설립	<b>인력현황</b>	정원 18명, 현원 34명	<b>재무현황 및 재정부담능력</b>	총재산 : 70억원, 부채 : 0	<b>전문성 확보 및 사무처리 실적</b>	100대 피아노 콘서트 등 다수 행사 및 축제 운영
<b>위탁사무명</b>	달성 문화도시 조성 사업																
<b>예산 및 기간</b>	예산 : 60억 원(연간 30억) 재계약기간 : 2026. 3. 1. ~ 2028. 2. 29.																
<b>대상기관명(대표자)</b>	(재)달성문화재단 이사장(최재훈)																
<b>주요사업</b>	군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향유 콘텐츠 및 인프라 구축																
<b>설립일자 및 주요연혁</b>	2011. 5. 17. 설립																
<b>인력현황</b>	정원 18명, 현원 34명																
<b>재무현황 및 재정부담능력</b>	총재산 : 70억원, 부채 : 0																
<b>전문성 확보 및 사무처리 실적</b>	100대 피아노 콘서트 등 다수 행사 및 축제 운영																

## ※ 수의협약(또는 재계약) 대상기관 검토사항

1. 수탁기관명 및 대표자 : (재)달성문화재단 이사장 최재훈
2. 소재지 및 전화번호 : 화원읍 성천로 5, 별관 7~8층 (053-668-4234)
3. 설립목적 : 지역 문화예술 및 문화복지 증진
4. 설립일자 : 2011. 5. 17.

년 월 일	설립근거
2011.05.17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5. 주요사업

구분	사업분야	군 소관부서
문화정책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예술 활동 지원</li> <li>•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자문</li> <li>•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금조성 및 운용</li> <li>•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수</li> <li>• 문화예술 행사의 개발과 개최</li> <li>• 문화예술관련 공공시설 관리 및 운영</li> <li>•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li> <li>• 공연 및 작품 전시사업</li> <li>•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달성군수가 위탁하는 사업</li> </ul>	문화예술과
문화도시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실행</li> <li>• 도시 문화생태계 구축</li> <li>• 도시 브랜드 창출을 위한 지역가치 재발견 및 문화기능 활성화 사업</li> <li>•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기반 조성</li> </ul>	문화예술과

## 6. 대표자 및 임원 현황

번호	직위	성명	소속
1	이사장	최재훈	현. 달성군수
2	대표이사	김종호	전. 달성군 자치행정국장
3	이사	김정화	현. 계명문화대 공연음악학부 교수
4	이사	김중곤	전. 대구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전. 경북공업고등학교 교장
5	이사	빈중희	현. 달성군 생활체조협회장 현. 달성군 동행봉사단 회장
6	이사	정대용	현. 경산시립예술단 단무장 전. 경북합창연합회 사무국장
7	당연직 이사	최태식	현. 달성군 문화관광국장
8	감사	김동열	현 미성회계법인 대표이사
9	당연직 감사	손계영	현. 달성군 문화예술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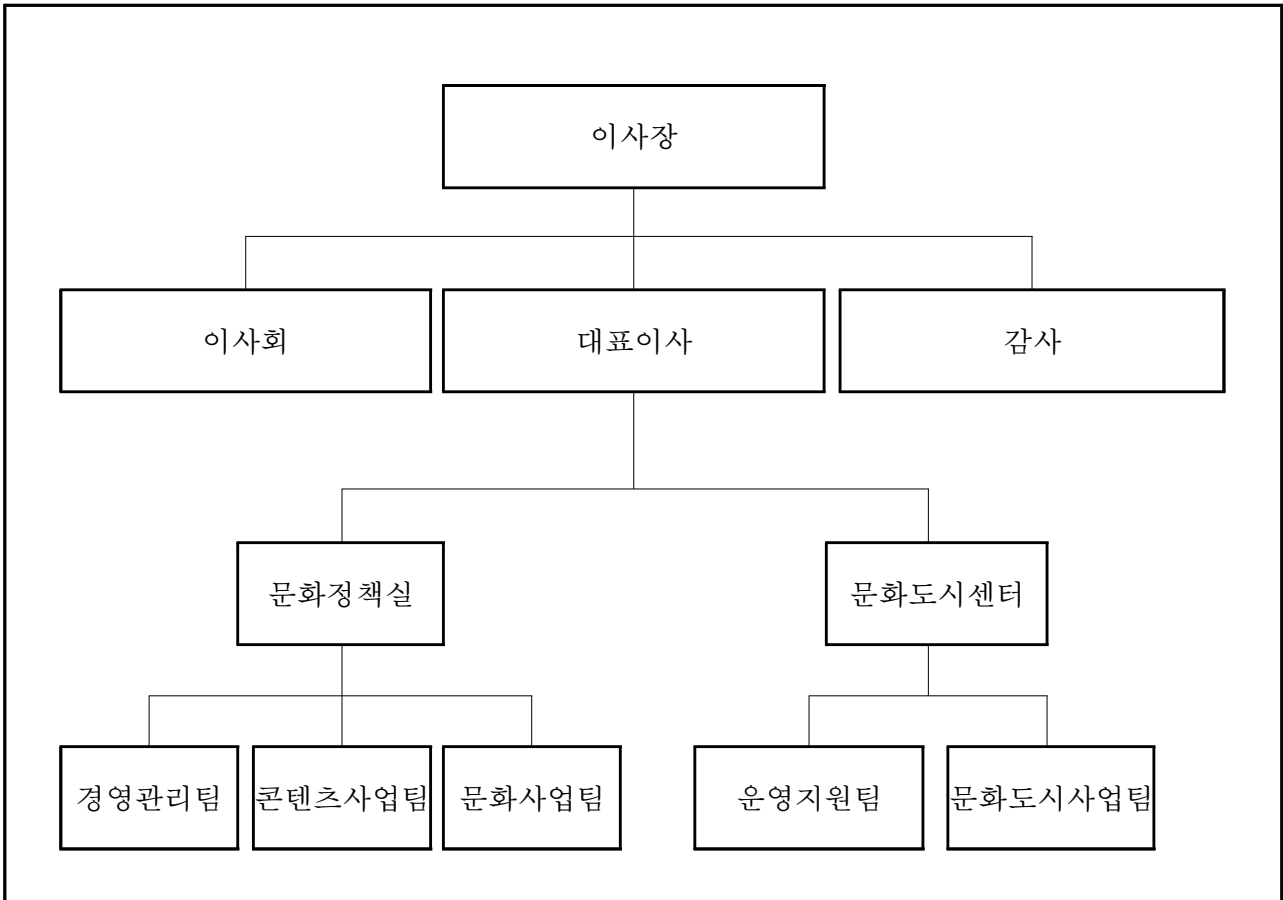
## 7. 직원현황: 총 35명(대표이사 포함)

○ 문화정책실 직원 : 정원 18명 / 현원 16명

\* 정원 외 : 7명(공무직 2, 기간제 5)

○ 문화도시센터 직원 : 전문계약직 10명(정원 외), 파견 1명

## 8. 조직도



## 9. 재무현황

가. 재 산 : 총 70억 원

나. 부 채 : 해당없음

다. 수 입 : 해당없음

## 심 사 의 결 서 [달성문화도시센터]

안 건	달성군 문화도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심의
의결주문	○ 심사대상 시설 및 위탁 운영단체 · 시 설 명: 달성문화도시센터 · 수 탁 자: 달성문화재단(이사장 최재훈) · 위탁기간: 2026. 1. 1.~ 2028. 2. 29.(2년)
의결내용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평가 심의 결과, 출석위원 <u>6</u> 명 중 동의 <u>6</u> 명, 비동의 <u>0</u> 명으로 재계약이 <u>(적격)</u> 부적격)함을 의결함.
2025년 10월 29일  달성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 대 구 광 역 시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의 대구

수신 달성군수(문화예술과장)

(경유)

제목 1~4차 문화도시 대상 2023년도 사업 성과평가 결과 알림

1.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1147(2024.3.11.)호와 관련입니다.
2. 1-4차 문화도시 24곳에 대한 2023년도 사업 성과평가 실시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가. 성과평가 개요
- 근거 : 지역문화진흥법 제14조에 따른 문화도시 추진실적 심사
  - 대상 \* 기초지자체명 가나다 순
    - 제1차 문화도시 7개(부천시, 서귀포시, 영도구, 원주시, 천안시, 청주시, 포항시)
    - 제2차 문화도시 5개(강릉시, 김해시, 부평구, 완주군, 춘천시)
    - 제3차 문화도시 6개(공주시, 목포시, 밀양시, 수원시, 영등포구, 익산시)
    - 제4차 문화도시 6개(고창군, **달성군**, 영월군, 의정부시, 울산광역시, 칠곡군)
  - 경과
    - 지자체 성과평가 계획 통보('24.1.3.) 및 자료 제출(-'24.1.17.)
    - 성과평가단 성과평가 실시('24.1.23.-1.25.)
    - 문화도시심의위원회 개최 및 성과평가 결과 심의·의결('24.2.23.)
- 나. 평가결과 ※ 결과 등급 내 순서는 기초지자체 가나다 순 / 평가 순위 및 점수와 무관

구 분	1차 도시	2차 도시	3차 도시	4차 도시
최우수 도시	제주 서귀포시 부산 영도구 충북 청주시	강원 춘천시	-	-
우수 도시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김해시 전북 완주군	충남 공주시 전남 목포시 경남 밀양시 서울 영등포구 전북 익산시	전북 고창군 <b>대구 달성군</b> 강원 영월군 울산광역시 경기 의정부시 경북 칠곡군
미흡 도시	강원 원주시	강원 강릉시 인천 부평구	경기 수원시	-

3. 아울러, 제7차 문화도시심의위원회('23.4.25.)에서 심의·의결된 문화도시 성과평가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성과평가 방향에 맞춰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붙임 양식을 참고하여 **'24. 4. 3.(수)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시 조성계획 변경 계획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양식) 문화도시 조성계획 변경신청서 1부. 끝.

대 구 광 역 시 장



주무관

**조현숙**

문화기획팀장

**임보건**

문화예술정책 전담 2024. 3. 12.

과장

**배정식**

협조자

시형 문화예술정책과-2978

(2024. 3. 12.)

접수 문화예술과-2838

(2024. 3. 12.)

우 41542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동인동1가, 대구광역시청) / <http://www.daegu.go.kr>

전화번호 053-803-3738 팩스번호 053-220-9232 / [luna1464@korea.kr](mailto:luna1464@korea.kr) / 대한민국 공개

청렴도 최상급, 청정도시 대구



# 대 구 광 역 시

자유의 함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

수신 달성군수(문화예술과장)  
(경유)

제목 1~4차 문화도시 대상 2024년도 사업 성과평가 결과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778(2025.2.24.)호와 관련하여 **1~4차 문화도시 24곳에 대한 2024년도 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가. 성과평가 개요

- 근 거 : 「지역문화진흥법」 제14조에 따른 문화도시 추진실적 심사
- 대 상 ※ 지자체명 가나다순
  - 제1차 문화도시(7개) : 부천시, 서귀포시, 영도구, 원주시, 천안시, 청주시, 포항시
  - 제2차 문화도시(5개) : 강릉시, 김해시, 부평구, 완주군, 춘천시
  - 제3차 문화도시(6개) : 공주시, 목포시, 밀양시, 수원시, 영등포구, 익산시
  - 제4차 문화도시(6개) : 고창군, 달성군, 영월군, 울산광역시, 의정부시, 칠곡군
- 추진경과
  - 지자체 성과평가 계획 통보(' 24.12.3.) 및 자료 제출(~' 25.1.8.)
  - 성과평가위원 성과평가 실시(' 25.1.22.~1.24.)
  - 문화도시심의위원회 개최 및 성과평가 결과 심의·의결(' 25.2.17.)

나. **평가 결과** ※ 결과 등급 내 순서는 기초지자체 가나다순 / 평가 순위 및 점수와 무관

구 분	1차 문화도시	2차 문화도시	3차 문화도시	4차 문화도시
최우수 도시	부산 영도구	강원 춘천시	경남 밀양시? ? 올해의 문화도시	강원 영월군
우수 도시	경기 부천시 제주 서귀포시 충남 천안시 충북 청주시 경북 포항시	강원 강릉시 경남 김해시 인천 부평구 전북 완주군	충남 공주시 전남 목포시 경기 수원시 서울 영등포구 전북 익산시	전북 고창군 <b>대구 달성군</b> 울산광역시 경기 의정부시
미흡 도시	강원 원주시			경북 칠곡군

끝.

# 대구광역시



---

주무관	<b>남상범</b>	문화기획팀장	<b>염보건</b>	문화예술정책	전광	2025. 2. 25.
협조자				과장	<b>최이경</b>	
시행	문화예술정책과-2134	(2025. 2. 25.)	접수	문화예술과-2308	(2025. 2. 25.)	
우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동안동1가, 대구광역시청) 5층 체육 진흥과				/ <a href="http://www.daegu.go.kr">http://www.daegu.go.kr</a>	
전화번호	053-803-3738	팩스번호	053-220-3831	/ <a href="mailto:yes2138@korea.kr">yes2138@korea.kr</a>		/ 비공개